

수시과제



대전광역시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 방안

최길수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

DAEJEON
DEVELOPMENT
INSTITUTE

I. 과제의 추진배경

- 대전광역시는 1949년 시의 승격과 1989년 광역시(구 직할시)로의 승격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, 2010년 말 현재 인구가 약150만에 공간적으로 540km²를 시계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.
- 대전광역시가 60년 이상 장구한 발전을 거듭해 오는 동안,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왔으나, 이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숭고한 뜻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과 표상이 부재한 상황임.
- 대전광역시가 60년 이상 장구한 발전을 거듭해 오는 동안,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왔으나, 이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나, 이들의 뛰어난 활약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은 현재 부재한 상황임.
-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오랜 기간 동안 대전의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단체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그 뜻을 기리는 (가칭) “대전광역시 명예의 전당(Hall of Fame: HOF)”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.
- 명예의 전당(名譽殿堂, Hall of Fame: HOF)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.

II. 명예의 전당 운영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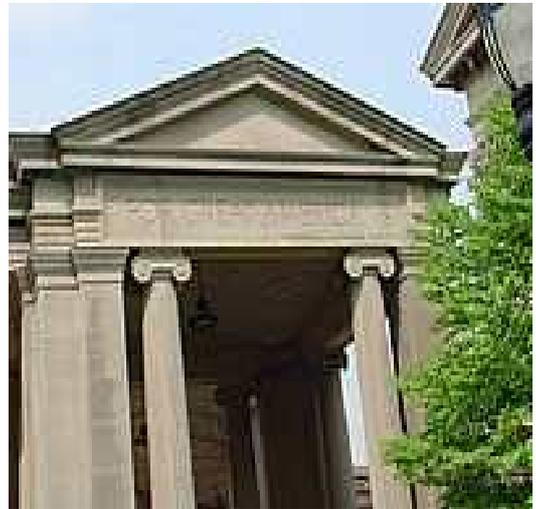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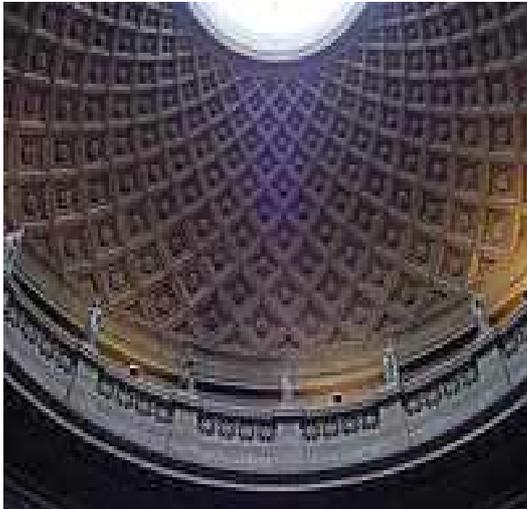
1. *The Hall of Fame for Great Americans*(미국)

1) 개요

- 역사적으로 뛰어난 영향을 미친 미국인에 대하여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00년에 건립되었으며, 조지 워싱턴을 비롯하여 102명 헌정.
- “미국인 명예의 전당”은 뉴욕의 Bronx Community College에 위치하고 있으며, 건물은 지붕이 있는 반원형 옥외복도이며, 화강암 기둥사이에는 선정된 사람들의 흉상이 놓여져 있고, 각 흉상 밑에는 성명·생년월일·사망일 및 그들이 남긴 명언 등을 새긴 청동판이 붙어 있음.

2) “미국인 명예의 전당(*The Hall of Fame for Great Americans*)”의 전경







2. 사이버 명예의 전당(전라북도)

1) 건립 및 운영의 개요

- “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”은 지난 1996년도, 첫 시상(그 이전에는 도민의 장)을 시작으로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모범 도민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임.
- “명예도민”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폭넓은 지원세력을 구축하고자 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, 해외 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 인사를 전라북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음.
- 전라북도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“자랑스런 전북인 대상”의 수상자와 “명예도민”을 선정된 사람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운영됨.



2) 시상 및 헌액의 내용

○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(96. 8.29일 제정)

○ 시상일자 : 도민의 날 행사시(10. 25)

○ 내 용 : 각 부문별 자랑스런전북인대상(패) 및 메달

○ 시상부문 : 8개 부문

- 문화·예술 : 문화·미술·음악·연극·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활동으로 문화·예술발전에 기여한 자
- 학술·언론 : 학술·언론·교육분야에서 향토 발전에 기여한 자
- 상 공 업 :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·수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
- 농림수산 : 농업·축산·수산·임업분야에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
- 공 익 : 공공·자선사업,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전북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자
- 체 육 : 도민 체위향상에 기여하였거나 체육인으로서 전북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한 자
- 효 열 : 경노 효친사상이 투철하고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·효부·열녀
- 근 로 : 사업장, 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자기 직무에 정려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공적을 쌓은 자

○ 시상부문 : 8개 부문



3. 기업인 명예의 전당(경남 창원시)

1) 건립의 취지

- 지역발전과 신기술 개발에 앞장선 기업인과 근로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창원컨벤션센터의 기업사랑운동 기념관에 67㎡의 규모로 2005년 9월에 건립.
- 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기업경영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함은 물론 ‘기업사랑운동’의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건립의 목적임.
-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30여 년간 국가산업발전의 상징도시로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던 밑바탕은 기업인과 근로인들의 땀과 노력임을 재인식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 전국지자체로는 최초로 설립해 운영.

2) 관련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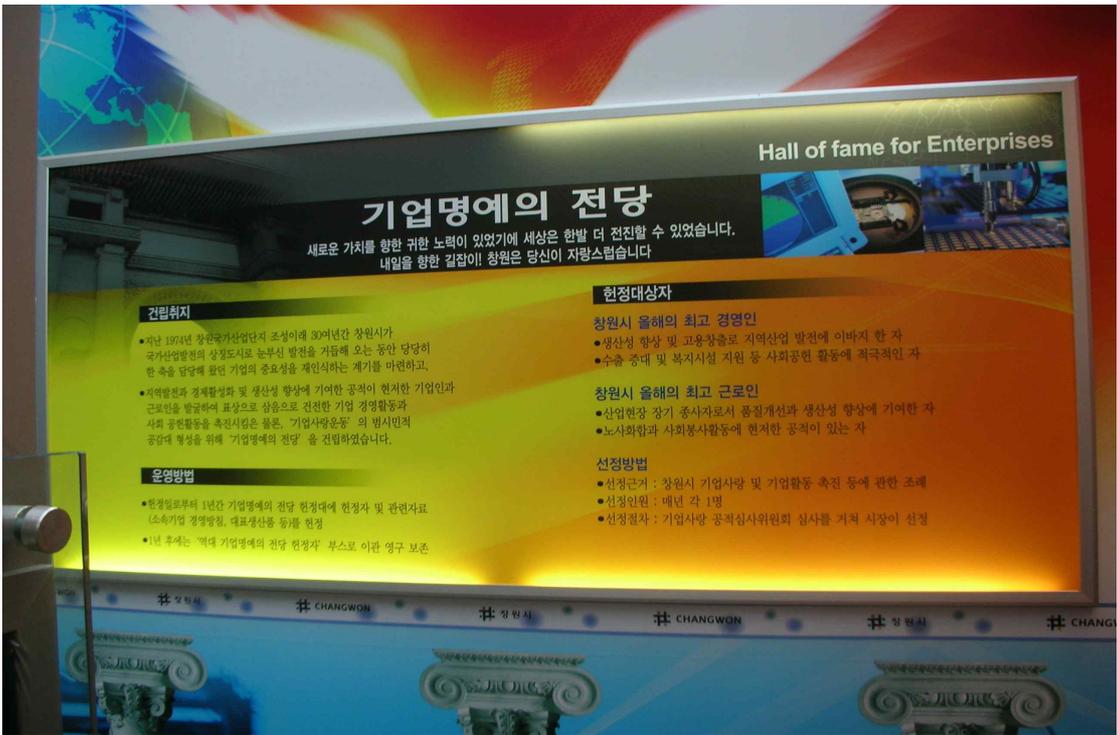
- “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”에 의거 시행.

3) 헌정의 내용

- 매년 10월 경에 창원시의 최고 경영인으로 선정된 1인과 근로자 1인의 헌정식이 개최되며, 홍보영상물과 얼굴동판, 주요 생산품 모형, 개인 공적 등이 전시됨.

4) 공간적 배치 현황





4.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(과학기술부/한국과학기술한림원)

1)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의 개요

-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인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항구적인 전시, 보존하기 위하여 2003년 2월에 국립서울과학관내에 건립.
-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(과학기술인 우대 등: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)에 의거 설치된 『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』 (국립과천과학관 내 위치)에 우리 역사상 탁월한 과학기술 업적과 발자취를 남긴 과학기술인을 헌정하여 기리고 있음.
- 기본자격
 -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우리나라 과학기술 선현 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과학기술인
 - 탁월한 과학기술 업적으로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분
 - 모든 과학기술인들의 귀감이 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만한 훌륭한 인품을 겸비한 분
- 업적기준
 - 과학기술 분야의 업적이어야 함
 -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룩한 업적을 대상으로 하되,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업적이어야 함
 -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종합적인 업적을 고려함
 - 헌정대상자는 후보자 자격 및 업적에 대한 조사, 평가 후 인물선정위

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, 언론을 통해 선정과정과 사유를 공지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선정대상자로 확정함.

○ 현액현황

- 국립과천과학관 내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에는 이순지, 최무선, 이 천, 장영실, 허 준, 홍대용, 김정호, 우장춘, 이원철, 이태규, 안동혁, 현신규, 최형섭, 이호왕, 김동일, 김순경, 장기려, 서호수, 이휘소, 김점동, 김재근, 이임학, 조백현, 조순탁, 석주명, 세종대왕 등이 선정되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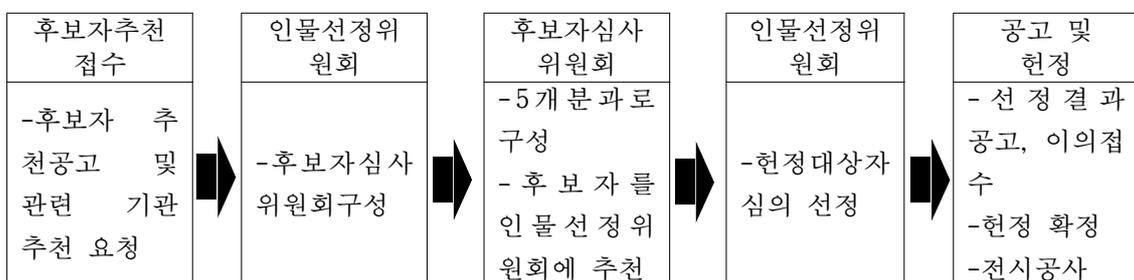
2)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의 선정심사

○ 후보자 추천

- 후보자는 일간지 광고, 인터넷광고, 유관기관 공문발송을 통하여 공모를 하며 과학기술관련 기관·단체 장 또는 3개 이상 기관에서 근무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이 추천할 수 있음.

○ 후보자 심사

- 후보자 심사를 위해 후보자심사위원회와 인물선정위원회를 운영.
- 후보자심사위원회: 공개 추천되거나 자체발굴된 후보자의 자격 및 업적 등을 조사·평가(이학분야, 공학분야, 의약분야, 농수산분야, 선현분야로 구성)
- 인물선정위원회: 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심사하여 선정대상자를 선정.



3)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(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설치운영규정)

- 2002년 11월에 제정된 “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설치운영규정”의 주요내용은 설치의 근거법, 사이버 명예의 전당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, 헌정대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및 선정주기, 후보자심사위원회 및 인물선정위원회의 운영, 헌정대상자의 심사·선정에 관한 규정, 명예의 전당 사업의 업무 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원장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훌륭한 과학기술 업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 사업계획을 수립·추진해야 함(동규정 제2조).
-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한림원과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내에 구축·운영 함(동규정 제4조).
- 헌정대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, 3개 이상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5인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, 그리고 후보자심사위원회 등임(동규정 제9조).
- 인물선정위원회와 한림원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자심사위원회는 헌정대상자의 자체발굴, 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사 및 심의, 인물선정위원회에 최종 후보자 추천, 재심의를 기능 수행(동규정 제10조).
- 인물선정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, 헌정대상자의 최종 심의·의결의 기능 수행(동규정 제11조).

4) 공간적 배치 현황





III. 대전광역시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 방안

1. 명예의 전당 건립 방안: (가칭)건립준비위원회를 통한 추진

□ (가칭)건립준비위원회의 구성

- 명예의 전당의 건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의 특정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수의 대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명예의 전당의 취지에 부합됨
- 위원회의 명의로 명예의 전당의 건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회의 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쳐 출범
- 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(기업·산업, 언론, 자원봉사, 교육과학, 문화예술 및 체육)를 대표하는 인사를 위하여 구성하되, 7인 ~ 9인으로 하고 간사는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에서 담당

□ (가칭)건립준비위원회의 기능

- 명예의 전당의 형태 심의·확정
 - 제1안 : 기업인 명예의 전당(경제인 및 근로자에 한하여 운영: 경상남도 창원시의 사례,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: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례)
 - 제2안 : 사이버 대전 명예의 전당(자랑스런 대전인상을 제정하고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이버 상에 헌정: 전라북도 사이버 명예의 전당 사례)

- 제3안 : 위대한 대전인 명예의 전당(명예의 전당 전용 공간의 확보를 통한 운영: 미국 Hall of Fame for Great American,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례)

○ 헌정의 영역에 대한 심의 · 확정

- 제1안으로 할 경우는 창원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매년 지역발전과 신기술 개발에 앞장선 경영인 1인과 근로인 1인을 선정하여 헌정
- 제2안으로 할 경우는 전라북도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벤치마킹하여, 자랑스런 대전인상(현행, 대전광역시 포상제도)을 제정하여 다양한 분야(문화·예술, 학술·언론, 상공업, 농림수산, 공익, 체육, 효열, 근로)를 수상한 인물과 명예의 시민으로 선정된 인물 헌정
 - 이 유형은 명예의 전당 출범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, 많은 인물들을 헌정할 수 있고, 예산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음
- 제3안으로 할 경우,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벤치마킹하여 추진
 - 이 유형의 경우, 전형적인 명예의 전당의 형태로 상징성이 강하고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, 장기간의 출범 준비기간이 소요되고, 소요비용이 과다하며,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음

○ 선택된 유형에 적합한 입지의 선정

- Off-Line 으로 할 경우, 공간적 입지선정
- On-Line 으로 할 경우, 운영체계의 선정

○ 명예의 전당의 공식명칭(영문 포함)과 상징모형의 선정

- 대시민 공모를 통한 명칭 및 상징물 선정: 문학계 및 미술계의 인사로 구성된 명칭 및 상징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

○ 명예의 전당 운영체계의 심의·확정

- 자체운영안: 운영주체로서 적합한 시의 부서 선정
- 법인설립을 통한 운영안: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

□ 제도적 근거의 마련

- 명예의 전당 운영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, 대부분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(창원시: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,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: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설치운영규정, 전북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: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조례)
-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근거는 우선 기존의 “대전광역시 포상조례”를 “위대한 대전인상 조례”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의 조문을 통해 명예의 전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함
- 동 시행규칙에 규정할 내용으로는 1) 시행규칙의 목적, 2) 용어의 정의, 3) 명예의 전당 전시 내용, 4) 헌액 대상의 자격 및 업적 기준, 5) 선정위원회(후보자심사위원회 및 인물선정위원회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, 6) 분야별 심사 절차, 7) 선정된 인물에 대한 인센티브의 내용, 8) 사무기구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임

2. 명예의 전당 운영 방안

- (가칭) 위대한 대전인 명예의 전당(The Hall of Fame for Great Daejeon Citizens)은 사무국, 후보자선정위원회, 인물선정위원회 등을 두고,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헌액대상자 선정
- 대전을 빛낸 위대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언론(국·영문 신문사 및 방송) 및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